

## 제 26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

주주님의 건승과 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26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22년 03월 11일 (금요일) 오전 09시 00분
2. 장 소 :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로 118번길 88 본사 별관 3층

### 3. 회의 목적사항

#### 가. 보고사항

- 1) 영업보고
- 2) 감사의 감사보고
- 3)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보고
- 4)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

#### 나. 부의 안건

- 1) 제1호 의안 : 제26기(2021.01.01 ~ 2021.12.31) 재무제표 승인의 건
- 2) 제2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
- 3) 제3호 의안 :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승인의 건
- 4) 제4호 의안 :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5) 제5호 의안 :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6) 제6호 의안 : 정관변경의 건

### 4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에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,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.

### 5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가. 직접행사 : 주총 참석장, 신분증

나. 대리행사 : 주총 참석장, 위임장(인감증명서 첨부), 대리인 신분증

2022년 02월 24일

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로 118번길 88  
우양에이치씨 주식회사  
대표이사 김 진 태 (직인생략)

(별첨. 1)

▣ 이사회보좌에 관한 사항 (2명) ▣

구분 (임기)	성명 (생년월일)	주요약력	외사와의 3년 거래내역	최대주주 와의 관계 및 주전인	제남사실 여부 및 결격사유	부실기업 임원여부
사내이사 (3년)	유중범 (1961.10.06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희대 기계공학학사(1987.02)</li> <li>- 두산메카텍(주) (1986.12~2002.12)</li> <li>- 우양에이지씨(주) 상무이사 (2009.11~2022.01)</li> <li>- 우양에이지씨(주) 전무이사 (2022.02.~ 현재)</li> </ul>	"없음"	"관계없음"	"없음"	"해당사항 없음"
사내이사 (3년)	김명수 (1967.12.0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홍익대 기계공학학사(1994.02)</li> <li>- 한라중공업 (1993.12~2000.01)</li> <li>- 한라스페코(주) (2000.01~2005.04)</li> <li>- 우양에이지씨(주) 이사 (2005.05~2021.02)</li> <li>- 우양에이지씨(주) 상무이사 (2021.03.~ 현재)</li> </ul>	"없음"	"관계없음"	"없음"	"해당사항 없음"

▣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의 변경 ▣

변경 후	변경 전
<p><b>제8조 [특별위로금]</b></p> <p>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은 퇴직금 외에 이사회 결의에 의해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<b>부칙</b></p> <p><b>제1조 [시행일]</b></p> <p>이 규정은 2022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<b>제8조 [특별위로금]</b></p> <p>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은 퇴직금 외에 이사회 결의에 의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

\*변경사유 : 임원퇴직 시 특별위로금의 한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.

(별첨. 2)

▣ 우양에이씨씨 주식회사의 정관 변경(안)

변경 후 _ (양쪽)	변경 전 _ (양쪽)	변경내용
<b>제2조 (목적)</b> 9. 엔지니어링업 1. ~ 11. (연행과 같음) 12. 기계설비 공사업 13. 산업 환경설비 공사업 14. ~ 17. (연행과 같음)	<b>제2조 (목적)</b> 9. 엔지니어링 활동업 1. ~ 11. (생략)  12. ~ 15. (생략)	▶ 문구변경  ▶ 사업목적 추가
<b>제3조 (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)</b> ① 이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평택시에 둔다.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, 출장소,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.	<b>제3조 (본점의 소재지)</b> 이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평택시에 둔다. 단,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, 출장소,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.	▶ 항목 분리
<b>제7조 (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)</b> <b>제8조 (주식등의 전자등록)</b> 이 회사는 「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오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	<b>제7조 (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)</b>	▶ 조항 명칭 변경  ▶ 조항 신설 (전자증권제도도입)
<b>제9조의 2 (이익배당,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)</b> ① 회사는 이익배당,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(이하 이 조에서 “종류주식”이라 한다)을 발행할 수 있다. ② 제5조의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의 범위 내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.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년 2% 이상 또는 발행가액 기준으로 년 1%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.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은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,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.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 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에 배당시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 한다는 결의가 있는 종회의 다음 종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종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다. ⑦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. ⑧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 ⑨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가액의 20%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. 다만,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, 조정사유,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. ⑩ 상환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1일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 ⑪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익의 유가증권이나(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)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.	<b>제8조의 2 (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의 수와 내용) _ 삭제</b> <b>제8조의 3 (의결권 있는 배당우선주식의 수와 내용) _ 삭제</b> <b>제8조의 4 (잔여배당분배우선주식의 수와 내용) _ 삭제</b> <b>제8조의 5 (상환주식의 수와 내용) _ 삭제</b> <b>제8조의 6 (전환주식의 수와 내용) _ 삭제</b> <b>제8조의 7 (상환전환주식의 수와 내용) _ 삭제</b>	▶ 종류주식의 구성 변경 (조항신설 & 구 조항 삭제)
<b>제9조의 3 (이익배당,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)</b> ① 회사는 이익배당,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(이하 이 조에서 “종류주식”이라 한다)을 발행할 수 있다. ② 제5조의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의 범위 내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.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년 2% 이상 또는 발행가액 기준으로 년 1%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.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은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,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.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에 배당시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 한다는 결의가 있는 종회의 다음 종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종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다. ⑦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 ⑧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일 이상 10년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. 1. 적대적 M&A가 우려되는 경우 2. 보통주식의 주가가 전환주식의 주가를 상회하는 경우 3. 종류주식에 대해서만 고배당 결과가 초래 될 경우 보통주식의 주주 보호정책 4. 경영상 중요하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⑨ 제7항 또는 제8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,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. ⑩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.	<b>제10조 (신주인수권)</b>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 1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	▶ 문구변경

변경 후 _ (양독)	변경 전 _ (양독)	변경내용
<p>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2. 「상법」 제340조의 2 및 제542조의 3의 규정에 ~</p> <p>3. ~ 4. (연행과 같음)</p> <p>5.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6.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 연구개발, 생산.판매.자본채유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7.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생담보권 및 외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담보권자 및 채권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8.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M&amp;A를 통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M&amp;A 투자자에게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9.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</p> <p>③ 제2항 각 오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</p> <p>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</p>	<p>2. 상법 제542조의 3규정에 ~</p> <p>3. 삭제</p> <p>4. ~ 5. (생략)</p> <p>6. ~ 12. (삭제)</p> <p>13. 외생담보권 및 외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14. M&amp;A를 통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</p> <p>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외사는 상법 제416조 제1호, 제2호, 제2호의2,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날 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. 단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의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.</p>	<p>▶ 문구변경 및 각 오 삭제 (신주의 배정범위 정리)</p>
<p><b>제11조 (주식매수선택권)</b></p> <p>① ~ ③ (연행과 같음)</p> <p>④ ~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~</p> <p>⑤ (연행과 같음)</p> <p>⑥ 다음 각 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~</p> <p>1. ~ 4. (연행과 같음)</p> <p>⑦ ~ 다음 각 오의 1에서 ~</p> <p>1. ~ 보통주식(또는 종류주식)을 ~</p> <p>2. ~ 보통주식(또는 종류주식)을 ~</p> <p>⑧ ~ ⑨ (연행과 같음)</p> <p>⑩ (연행과 같음)</p>	<p><b>제10조의 2 (일반공모증자등) _ 삭제</b></p> <p><b>제11조 (주식매수선택권)</b>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~ 최대주주(이하 "최대주주" 라 함)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~</p> <p>⑤ (생략)</p> <p>⑥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~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⑦ ~ 다음 각 1에서</p> <p>1. ~ 기명식 보통주식(또는 기명식 우선주식)을 ~</p> <p>2. ~ 기명식 보통주식(또는 기명식 우선주식)을 ~</p> <p>⑧ ~ ⑨ (생략)</p> <p>⑩ (삭제)</p> <p>⑪ (생략)</p>	<p>▶ 문구통합</p> <p>▶ 문구변경</p> <p>▶ 상법 제340조의 2 규정</p>
<p><b>제11조의2 (우리사주매수선택권)</b></p> <p>① ~ ② (연행과 같음)</p> <p>③ ~ 다만,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④ ~ 100분의 70 이상 ~</p>	<p><b>제11조의2 (우리사주매수선택권)</b>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(삭제)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~ 100분의 80 이상 ~</p>	<p>▶ 단서 문구 추가</p> <p>▶ 행사가격 조정</p>
<p><b>제12조 (신주의 동등배당)</b></p> <p>이 외사는 배당 기준일 전에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하게 배당한다.</p>	<p><b>제12조 (신주의 배당기산일) _ 삭제</b></p>	<p>▶ 조항신설 &amp; 구 조항 삭제</p>
<p><b>제13조 (주식의 소각)</b></p> <p>외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.</p>	<p><b>제13조 (주식의 소각)</b></p> <p>① 외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.</p>	<p>▶ ②항 삭제</p>
<p><b>제14조 (명의개서 대리인)</b></p> <p>① (연행과 같음)</p> <p>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</p> <p>③ ~ 그 복본을 ~ 주식의 전자등록, 주주명부의 관리, ~</p> <p>④ ~ 증권명의개서 대행업무 규정에 따른다.</p>	<p><b>제14조 (명의개서 대리인)</b>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.</p> <p>③ ~ 그 부분을 ~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, 주권의 발행, 신고의 접수, ~</p> <p>④ ~ 증권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</p>	<p>▶ 문구변경 (전자증권제도 도입)</p>
<p><b>제15조 (주주 등의 주소,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)</b></p> <p>① ~ ③ (연행과 같음)</p> <p>④ 제1항에서 제3항은 주식.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</p>	<p><b>제15조 (주주 등의 주소,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)</b>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	<p>▶ 전자증권제도 도입</p>
<p><b>제15조의 2 (주주명부)</b></p> <p>① 외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, 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외사는 5%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(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)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③ 외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 할 수 있다</p>	<p><b>제15조의 2 (주주명부)</b></p> <p>외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.</p>	<p>▶ 문항추가</p>
<p><b>제17조 (전환사채의 발행)</b></p> <p>① 외사는 다음 각 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~</p> <p>1. 사채의 액면총액이 2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2. 사채의 액면총액이 2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3. 사채의 액면총액이 2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 연구 개발, 생산.판매.자본채유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	<p><b>제17조 (전환사채의 발행)</b></p> <p>① 외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800억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오의 경우 ~</p> <p>1.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</p> <p>2.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3. 외국합작법인 및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 자본참여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4. 상법 제51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개선 등 외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	<p>▶ 문구변경 및 발행인도, 제3자의 범위 조정</p>

변경 후 _ (양독)	변경 전 _ (양독)	변경내용
<p>② (연행과 같음)</p> <p>③ ~ 발행일후 1월이 ~</p> <p>④ ~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~</p> <p><b>제18조 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</b></p> <p>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~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채의 액면총액이 2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li> <li>2. 사채의 액면총액이 2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li> <li>3. 사채의 액면총액이 2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 연구개발, 생산·판매·자본채유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li> </ol> <p>② ~ ③ (연행과 같음)</p> <p>④ ~ 발행일후 1월이 ~</p> <p>⑤ (연행과 같음)</p>	<p>② (생략)</p> <p>③ ~ 발행일후 1월(단,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1년)이 ~</p> <p>④ ~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~</p> <p><b>제18조 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</b></p> <p>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800억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7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~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④ ~ 발행일후 1월(단,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1년)이 ~</p> <p>⑤ (생략)</p>	<p>▶ 문구변경 및 발행한도, 제3자의 범위 조정</p>
<p><b>제19조 (교환사채의 발행)</b></p> <p>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2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</p>		<p>▶ 조항 신설</p>
<p><b>제20조 (사채 발행의 위임)</b></p> <p>(연행과 같음)</p> <p><b>제21조 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</b></p> <p>~. 다만,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제15조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.</p> <p><b>제21조의2 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</b></p> <p>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 다만,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.</p>	<p><b>제19조의2 (사채 발행의 위임)</b></p> <p>(생략)</p> <p><b>제19조 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</b></p> <p>(생략)</p>	<p>▶ 조항 순서 변경 및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사항 반영, 조항신설</p>
<p><b>제22조 (소집시기)</b></p> <p><b>제23조 (소집권자)</b></p> <p>① (연행과 같음)</p> <p>② ~ 정관 제37조의 규정을</p> <p><b>제24조 (소집통지 및 공고)</b></p> <p><b>제25조 (소집지)</b></p> <p><b>제26조 (의장)</b></p> <p>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</p> <p>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</p> <p><b>제27조 (의장의 질서유지권)</b></p> <p><b>제28 (주주의 의결권)</b></p> <p><b>제29조 (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)</b></p> <p><b>제30조 (의결권의 불통일행사)</b></p> <p><b>제31조 (의결권의 대리행사)</b></p> <p><b>제32조 (주주총회의 결의방법)</b></p> <p>~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~ 수로 하여야 한다.</p> <p><b>제33조 (주주총회의 의사록)</b></p> <p><b>제34조 (이사의 수)</b></p> <p>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8명 이내로 하고,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 상으로 한다.</p> <p>② 사외이사의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20조 (소집시기)</b></p> <p><b>제21조 (소집권자)</b>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~ 정관 제24조의 규정을</p> <p><b>제22조 (소집통지 및 공고)</b></p> <p><b>제23조 (소집지)</b></p> <p><b>제24조 (의장)</b></p> <p>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.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,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<b>제25조 (의장의 질서유지권)</b></p> <p><b>제26조 (주주의 의결권)</b></p> <p><b>제27조 (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)</b></p> <p><b>제28조 (의결권의 불통일행사)</b></p> <p><b>제29조 (의결권의 대리행사)</b></p>	<p>▶ 정관변경에 따른 적용규정 조항 변경</p>
<p><b>제35조 (이사의 선임)</b></p> <p><b>제36조 (이사의 임기)</b></p> <p><b>제37조 (이사의 직무)</b></p> <p>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<b>제38조 (이사의 의무)</b></p> <p><b>제39조 (이사의 보수와 퇴직금)</b></p>	<p><b>제30조 (주주총회의 결의방법)</b></p> <p>~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~ 수로써 한다.</p> <p><b>제31조 (주주총회의 의사록)</b></p> <p><b>제32조 (이사의 수)</b></p> <p>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8인 이내로 한다.</p> <p><b>제33조 (이사의 선임)</b></p> <p><b>제34조 (이사의 임기)</b></p> <p><b>제35조 (이사의 직무)</b></p> <p>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,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을 대행한다.</p> <p><b>제36조 (이사의 의무)</b></p> <p><b>제37조 (이사의 보수와 퇴직금)</b></p> <p><b>제37조의2 (이사의 책임과 감정) _ 삭제</b></p>	<p>▶ 항목 분리</p> <p>▶ 문구변경</p> <p>▶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추가</p>
<p><b>제40조 (이사회의 구성과 소집)</b></p> <p>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.</p> <p>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</p> <p>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</p> <p>④ (연행과 같음)</p> <p>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.</p> <p>⑥ (연행과 같음)</p> <p><b>제41조 (이사회의 결의방법)</b></p> <p>① ~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다만 상법 제397조의2(외사의 기와 및 재산의 유용금지) 및 제398조(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</p> <p>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~</p> <p>③ (연행과 같음)</p> <p>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</p>	<p><b>제38조 (이사회의 구성과 소집)</b></p> <p>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고, 이사회는 의장이 회의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</p> <p>③ 다른 이사는 의장에게 이사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의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(생략)</p> <p><b>제39조 (이사회의 결의방법)</b></p> <p>① ~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</p> <p>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~</p> <p>③ (생략)</p>	<p>▶ 문구변경</p> <p>▶ 조항삭제</p>
<p>④ (연행과 같음)</p> <p>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.</p> <p>⑥ (연행과 같음)</p> <p><b>제41조 (이사회의 결의방법)</b></p> <p>① ~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다만 상법 제397조의2(외사의 기와 및 재산의 유용금지) 및 제398조(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</p> <p>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~</p> <p>③ (연행과 같음)</p> <p>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</p>	<p>④ (연행과 같음)</p> <p>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.</p> <p>⑥ (연행과 같음)</p> <p><b>제41조 (이사회의 결의방법)</b></p> <p>① ~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다만 상법 제397조의2(외사의 기와 및 재산의 유용금지) 및 제398조(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</p> <p>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~</p> <p>③ (연행과 같음)</p> <p>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</p>	<p>▶ 단서 항목추가 및 문구수정</p>

변경 후 _ (양독)	변경 전 _ (양독)	변경내용
사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.		▶ 단서 항목추가
<b>제42조 (이사회의 의사록)</b> <b>제43조 (위원회)</b> ①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. ② (연행과 같음) ③ ~ 정관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	<b>제40조 (이사회의 의사록)</b> <b>제41조 (위원회)</b> ① 회사는 이사의 내에 다음 각 오의 위원회를 둔다. 1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② (생략) ③ ~ 정관 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	▶ 위원회 설치 항목 및 적용규정 조항 변경
<b>제44조 (상담역 및 고문)</b> <b>제45조 (대표이사의 선임)</b>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.	<b>제42조 (상담역 및 고문)</b> <b>제43조 (대표이사의 선임)</b>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	▶ 문구수정
<b>제46조 (대표이사의 직무)</b> <b>제47조 (감사의 수)</b> <b>제48조 (감사의 선임·해임)</b>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·해임한다.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. ③ ~ 다만,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만큼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.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,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⑤ 제3항·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수를 합산한다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	<b>제44조 (대표이사의 직무)</b> <b>제45조 (감사의 수)</b> <b>제46조(감사의 선임)</b>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. ③ ~ 그러나 의결권 없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다만,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.	▶ 감사의 해임규정 및 의결요건 문구 변경
<b>제49조 (감사의 임기와 보선)</b> ① (연행과 같음) ② ~ 정관 제47조에서 ~	<b>제47조(감사의 임기와 보선)</b> ① (생략) ② ~ 정관 제45조에서 ~	
<b>제50조 (감사의 직무 등)</b> ① ~ ③ (연행과 같음) ④ ~ 정관 제38조 제3항의 규정을 ~ ⑤ ~ ⑦ (연행과 같음)	<b>제48조(감사의 직무와 의무)</b> ① ~ ③ (생략) ④ ~ 정관 제36조 제3항 및 제37조의 2의 규정을 ~ ⑤ ~ ⑦ (생략)	▶ 적용규정 조항 변경
<b>제51조 (감사록)</b> <b>제52조 (감사의 보수와 퇴직금)</b> <b>제53조 (사업연도)</b>	<b>제49조(감사록)</b> <b>제50 조(감사의 보수와 퇴직금)</b> <b>제51조(사업연도)</b>	
<b>제54조 (사무대표 등의 작성 등)</b> ① (연행과 같음) ② ~ 정기주주총회 의결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 전까지 ~ ③ ~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~ ④ ~ ⑤ (연행과 같음) ⑥ (연행과 같음)	<b>제52조(사무대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·비치 등)</b> ① (생략) ② ~ 정기주주총회 의결의 6주 전까지 ~ ③ ~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일 전까지 ~ ④ ~ ⑤ (생략) ⑥ (삭제) ⑦ (생략)	▶ 사무대표 제출 시기에 관한 문구 및 주주총회 보고 문구 추가
<b>제55조 (외부감사인의 선임)</b> ~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,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~	<b>제53조 (외부감사인의 선임)</b> ~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,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~	▶ 문구수정
<b>제56조 (이익금의 처분)</b> <b>제57조 (이익배당)</b> ① (연행과 같음) ② ~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~ ③ ~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정한 날 현재의 ~ ④ ~ .	<b>제54조 (이익금의 처분)</b> <b>제55조 (이익배당)</b> ① (생략) ② ~ 주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~ ③ ~ 매 결산기말 현재의 ~ ④ ~ . (단서문구 삭제)	▶ 주식으로 배당 할 경우 종류주식의 종류와 배당 시점 및 적용규정 조항 변경
<b>제58조 (분기배당)</b> ① ~ ③ (연행과 같음) ④ 제1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 배당한다. ⑤ 제9조의 2, 제9조의 3의 종류주식에 ~	<b>제56조 (분기배당)</b> ① ~ ③ (생략) ④ (삭제) ⑤ 제8조의 2 내지 제8조의 7의 배당우선주식에 ~	▶ 동등 배당 및 적용규정 조항 변경
<b>제59조 (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)</b>	<b>제57조 (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)</b>	

<b>부 칙</b> <b>2. (세칙내규)</b> 1. 단,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 _ (단서문구 추가)	<b>부 칙</b> <b>2. (세칙내규)</b> ~.	▶ 단서조항 추가
<b>부 칙</b> <b>1. (시행일)</b> 이 정관은 2022년 0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 <b>2. (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 적용례)</b> 제8조, 제14조, 제15조, 및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이 회사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 경우 이 제도를 도입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<b>3. (신주의 제3차 배정 한도의 개설행)</b> 제10조 제2항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본 정관개정으로 새로이 한도를 설정한다. 즉, 해당 각오의 사유로 기발행된 주식수는 누적(차감)하지 않고, 새로이 한도를 부여한다. <b>4. (사채의 제3차 배정 한도의 개설행)</b>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, 제1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본 정관개정으로 새로이 한도금액을 설정한다. 즉, 해당 각오의 사유로 기발행된 사채증액은 누적(차감)하지 않고, 새로이 한도를 부여한다. <b>5. (사외이사 선임의 예외)</b>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외이사의 선임은 상법 및 기타법령에서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.	<b>부 칙</b> <b>1. (시행일)</b> 이 정관은 2022년 0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 <b>2. (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 적용례)</b> 제8조, 제14조, 제15조, 및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이 회사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 경우 이 제도를 도입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<b>3. (신주의 제3차 배정 한도의 개설행)</b> 제10조 제2항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본 정관개정으로 새로이 한도를 설정한다. 즉, 해당 각오의 사유로 기발행된 주식수는 누적(차감)하지 않고, 새로이 한도를 부여한다. <b>4. (사채의 제3차 배정 한도의 개설행)</b>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, 제1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본 정관개정으로 새로이 한도금액을 설정한다. 즉, 해당 각오의 사유로 기발행된 사채증액은 누적(차감)하지 않고, 새로이 한도를 부여한다. <b>5. (사외이사 선임의 예외)</b>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외이사의 선임은 상법 및 기타법령에서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.	▶ 정관변경에 따른 부칙 시행일 설정 ▶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대한 사항 ▶ 신주 및 사채 등 제3차 배정 발행한도의 개설행에 관한 사항 및 사외이사 선임의 예외 사항

\* 정관변경의 자세한 내용은 주주총회 당일 회의장에 비치된 정관 신·구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주주총회 참석 위임장

### 우양에이지씨 주식회사 귀중

수임인 성명 :  
주민등록번호 :  
주소 :

본인 \_\_\_\_\_은 귀사의 주주로서 2022년 03월 11일 개최되는우양에이지씨 주식회사 주주총회에  
위에 기재한 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임합니다. 다만 본인이 귀사의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 
주식수 및 수임인에게 위임되는 주식의 내용 및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.

- 아 래 -

### 1. 소유주식 및 의결위임 주식내역

구 분	주식수
소유주식총수	보통주 _____주
위임주식수	보통주 _____주

### 2. 위임한 권한의 내용

- 2022년 03월 11일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인정된 발언, 투표에  
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등 주주의 제반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항.
- 기타 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

2022년 월 일

위임인 성명 :  
주민등록번호 :  
주소 :

첨부 : 인감증명서 1부